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훈계 · 주의 요구

제 목 관용차량 구매 업무처리 부적정

기 관 명 울산광역시

훈계대상자 ① 울산광역시 ○○○○과 지방○○○○○ ○○○
(전 ○○○과)

② 울산광역시 ○○과 지방○○○○○ ○○○

내 용

지방○○○○○ ○○○는 2012. 1. 13.부터 2016. 7. 14.까지 울산광역시 ○○○과에서 물품구매 등 각종 계약업무와 관용차량 관리 업무를 처리한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고, 지방○○○○○ ○○○는 2017. 1. 13.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울산광역시 ○○○과에서 관용차량 관리 업무를 처리한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울산광역시에서는 관용차량 구매 시 사업담당자가 회계부서에 구매의뢰를 하고, 회계과에서는 의뢰받은 차량을 조달구매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51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 및 물품구매 업무 등을 담당하는 회계관계직원(이하 “회계담당자”라 한다)은 보다 엄격하게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공정해야 하며 계약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하는 행위,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자동차 판매의 경우 영업사원의 자동차 판매 실적에 대해 통상 일정부분 성과수당 성격의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자동차 구매 시 일반적인 사항, 모델 등을 지정하면 되지 특정 영업사업의 성명 및 사원번호까지 지정하여 구매요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울산광역시에서는 2015년 이후 ○○회에 걸쳐 나라장터를 통해 수소연료전지차, 화물차 등 관용차량을 조달구매하였는데, 그 중 [붙임]과 같이 ○○회에 대해 물품조달요청 당시 ‘기타’란에 성명 및 사원번호 등 자동차 제조사 영업사원(이하 “영업사원”이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였고, 특히 2017. 3월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당시 회계담당자는 1차적으로 물품조달요청서 작성 후 다음날 2차적으로 ‘기타’란의 영업사원의 사원번호를 1개에서 2개로 수정기재¹⁾한 후 구

1) 최초 사원번호 ○○○○○○○인 영업사원만 기재되어 있었으나, 수정 후 사원번호 ○○○○○○○인 영업사원 ○대, 사원번호 ○○○○○○○인 영업사원 ○대로 수정됨

매하였다.

구매할 자동차 제조사 영업사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이유를 살펴보면 주로 회계담당자들은 사업담당자로부터 구두(유선전화 포함)로 영업사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기재하였고, 사업담당자들은 구매결정 전 차종, 색상, 옵션 등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영업사원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영업사원의 인적사항 기재요청을 무시하기 어려워 회계담당자에게 영업사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²⁾

그리고 2017. 3월 수소연료전지차를 구매 할 당시 영업사원의 인적사항을 1명에서 2명으로 수정한 이유를 기재한 사유를 살펴보면 회계담당자는 사업담당자가 차량구매에 도움을 준 영업사원을 기재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1차적으로 그 영업사원의 인적사항을 물품조달요청서에 기재하였으나 시청 관용차량 관리담당자(이하 “차량담당자”라 한다)가 다른 영업사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³⁾하여 2차적으로 물품조달요청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2017년 5월 울산광역시 ○○○○처의 차량 구매와 관련하여 사업담당자는 2017년 3~4월 경 유선통화로 시청 ○○과로부터 먼저 연락⁴⁾이 와서 영업사원을 소개받았고, 이 영업사원을 통해 차량설명을 받은 후 구매대상 차량을 결정하였으며, 물품구매의뢰를 하면서 회계담당자에게 구두로 영업사원의 인적

2) [붙임] 중 연번 1, 2, 6 구매 당시 사업담당자는 회계담당자에게 영업사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회계담당자(본청 관용차량 관리업무를 함께 맡고 있었음)는 본인이 물품구매요청 차량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구매대상 차량에 대한 영업사원의 설명을 듣고 그 영업사원을 물품구매요청서에 기재하였다고 함

3) 차량담당자(○○과, 지방○○○○○ ○○○)는 사업담당자의 물품구매의뢰 전 영업사원의 방문으로 수소연료전지 차량 구매의사를 알고 있었고, 1차 물품구매요청서 작성 후 한 명의 영업사원이 차량 전체(○대)에 대한 담당 영업사원으로 지정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여 회계담당자에게 자신을 방문한 영업사원도 함께 나누어 기재하도록 요청하였다고 함

4) 직급, 성명 등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함

사항 기재를 요청하였다.⁵⁾

그러므로 울산광역시에서는 물품조달요청서에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식별번호 외에 그 물품을 공급하는 회사의 특정 대리점과 영업사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등 관용차량 구매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장은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관하 구·군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조치하시기 바랍니다.

5) 울산광역시 ○○○○처 사업담당자가 시청 ○○과 직원으로부터 요청받았다고 함

[붙임]

물품조달 요청 당시 특정 영업사원 지정 내역

연번	조달 요청일	차종	수량 (대)	구매액 (백만원)	특정인 지정내역	회계 담당자	사업 담당자
1	15.01.07	수소전지차	7	1,017	지점, 성명	○○과 ○○○	○○○○과 ○○○
2	15.03.27.	화물차	1	25	지점, 성명, 사원번호	○○과 ○○○	○○○○과 ○○○
3	15.03.27.	화물차	2	46	지점, 성명, 사원번호	○○과 ○○○	○○과 ○○○
4	15.05.21.	승합차	1	193	지점, 성명, 사원번호	○○과 ○○○	○○과 ○○○
5	15.05.27.	승합차	1	72	지점, 성명, 사원번호	○○과 ○○○	○○과 ○○○
6	15.10.06.	수소전지차	1	80	지점, 성명, 사원번호	○○과 ○○○	○○○○과 ○○○
7	16.04.08.	승합차	1	28	지점, 성명	○○과 ○○○	○○과 ○○○
8	16.04.08.	화물차	1	22	지점, 성명	○○과 ○○○	○○과 ○○○
9	16.04.08.	화물차	2	52	지점, 성명	○○과 ○○○	○○과 ○○○
10	16.04.11.	승합차	1	104	지점, 성명	○○과 ○○○	○○과 ○○○
11	16.11.14.	승용전기차	2	86	지점, 성명	○○과 ○○○	○○과 ○○○
12	17.02.15.	승용전기차	1	43	사원번호	○○과 ○○○	○○과 ○○○
13	17.02.17.	화물차	2	39	사원번호	○○과 ○○○	○○과 ○○○
14	17.03.03.	화물차	3	87	사원번호	○○과 ○○○	○○과 ○○○
15	17.03.07.	일반승용차	1	106	사원번호	○○과 ○○○	○○과 ○○○
16	17.03.14.	수소전지차	8	618	사원번호 ※ 1→2명 수정기재	○○과 ○○○	○○○○과 ○○○
17	16.08.19.	승합차	1	29	지점, 성명, 사원번호	○○○○실 ○○○	○○○○실 ○○○
18	17.05.17.	승합차	1	30	사원번호	○○○○실 ○○○	○○○○실 ○○○